



의안번호	제9호
------	-----

<p><b>논산시 종합사회복지관 관리·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</b></p>
--

제 출 자	논산시장
제출연월일	2019. 2. 13.

# 논산시 종합사회복지관 관리·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의안 번호	제9호
----------	-----

제출연월일 : 2019. 2. 13.  
제 출 자 : 논 산 시 장

## 1. 제안이유

- 가. 「사회복지사업법 시행령」 개정에 따라 관련 조항을 정비하고
- 나. 종합사회복지관의 시설별 운영요금을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, 시설요금의 현실화 등 항목을 일부개정 하고자 함.

## 2. 주요내용

- 가. 「사회복지사업법 시행령」에 따라 사회복지사 3급 기준을 폐지함에 따라 운영요원 확보 등급별 자격기준을 2급으로 정비함.  
(안 제9조)
- 나. 종합사회복지관 사용료 중 경로식당 사용료 변경(인상)  
(안 제16조 별표1)

## 3. 참고사항

- 가. 관계법령 : 붙임 참조
- 나. 예산조치 : 해당없음
- 다. 기타사항

- (1) 부패영향평가 : 개선권고 반영 (자격기준에 대한 결격사유 미흡)
  - 제7조의3 제3항에 위촉하는 위원의 자격 기준 및 결격사유 미흡
  - 재량규정의 구체성·객관성 부족하여 확보될 수 있도록 조항 수정 권고
  - 수정권고안 제7조의3(위원회의 구성) 중 다만, 금품·향응 수수, 불법로비, 배임·횡령 등 부패에 연루된 사람은 제외한다.

라고 내용 반영

- 제7조의3 제4항에 위원의 연임차수 제한 등에 관한 규정없어 조항  
수정 권고

- 수정권고안 제7조의3(위원회의 구성) 중 위원의 임기는  
당연직은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며, 위촉직은 3년으로 하되  
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. 라고 내용 반영

(2) 성별영향분석평가 : 의견없음

(3) 규제심사 : 규제심사 대상 아님

(4) 입법예고 및 전자공청회

(가) 예고기간 : 2019. 1. 03 . ~ 2019. 1. 23. (20일 이상)

(나) 결과 : 의견없음

(5) 비용추계서 : 붙임

(6) 충청남도소관실과 : 충청남도 복지정책과

□ 개정조례안

논산시 조례 제 호

논산시 종합사회복지관 관리·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논산시 종합사회복지관 관리·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7조의3제3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다만, 금품·향응수수·불법로비, 배임·횡령 등 부패에 연루된 사람은 제외한다.

제7조의3제4항 중 “ 위촉직은 3년으로 하되 연임”을 “위촉직은 3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”으로 한다.

제9조제1항 중 “사회복지사 3급”을 “사회복지사 2급”으로 한다.

별표 1의 경로식당란 중 “1,000원”을 “2,000원”으로 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소 관 부 서		성 명
입 안 자	공공시설사업소장	허 원
	종합사회복지관탐장	김 현 숙
	담 당 자	지 창 하 (746-8423)

**[별표 1]** (개정 2011. 12. 30)(개정 2013.7.10)

논산시종합사회복지관 시설별 요금징수 기준(제16조 관련)

시설명	세부용도	기준	금액
종합사회 복지관	경로식당	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, 장애인, 국가보훈대상자/1식	무료
		65세 이상 노인 복지관수강자/1식	2,000원



[별표 1]

논산시종합사회복지관 시설별 요금징수 기준 (제16조 관련)

시설명	세부용도	기준	금액
종합사회 복지관	경로식당	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, 장애인, 국가보훈대상자/1식	무료
		65세 이상 노인 복지관수강자/1식	<u>1,000원</u>

[별표 1]

논산시종합사회복지관 시설별 요금징수 기준 (제16조 관련)

시설명	세부용도	기준	금액
종합사회 복지관	경로식당	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, 장애인, 국가보훈대상자/1식	무료
		65세 이상 노인 복지관수강자/1식	<u>2,000원</u>

**1. 비용발생 요인 및 관련 조문**

- ▶ 별표1 시설별 요금징수 기준 중 경로식당 요금 인상에 따른 세입증가

**2. 비용추계결과****가. 추계의 전제**

- ▶ 경로식당 이용 요금 인상에 따른 세입 증가

**나. 추계결과**

- ▶ 세입 : 305,000천원
  - 경로식당 이용요금 : 305,000천원
    - 2,000원 × 30,500명(2019년 예상 이용자수)=61,000천원

**3. 작성자**

공공시설사업소장 허 원

## 〈연도별 비용 추계표〉

(단위 : 천원)

구	분	1차 년도 (2019년)	2차 년도 (2020년)	3차 년도 (2021년)	4차 년도 (2022년)	5차 년도 (2023년)	계
세	입	61,000	61,000	61,000	61,000	61,000	305,000
시	비						
세	출						
의존 재원	소 계						
	국 도 비						
	시 비						
자체 수입	소 계	61,000	61,000	61,000	61,000	61,000	305,000
	지 방 세						
	세 외 수입	61,000	61,000	61,000	61,000	61,000	305,000
지	방	채					
기	금						
공기업	특별회계						
기 (채무부담, 민자 등)	타						

**□ 「지방자치법」 제22조**

제22조(조례)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. 다만,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.

**□ 「사회복지사업법 시행령」 제2조**

제2조(사회복지사의 등급별 자격기준 등) ①법 제1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사회복지사의 등급별 자격기준은 별표 1과 같다. <개정 2018.4.24.>

※ 사회복지사 자격 3급 폐지에 따른 자격기준 등 삭제

시행령 별표 1(사회복지사의 등급별 자격기준) 사회복지사 3급 삭제

**□ 「논산시종합사회복지관 관리·운영조례」 제16조**

제16조(시설별 요금 및 수강료) 복지관 시설 또는 프로그램을 이용하고자 하는 사람은 별표 1기준에 의한 요금 및 별표 2의 기준에 의한 수강료를 납부하여야 한다.

**참고 2**

**타 시군 경로식당 이용료 현황**

구 분	경로식당 이용료	비 고
논산시종합사회복지관	1,000원	직영운영
공주시종합사회복지관	2,000원	
보령시종합사회복지관	1,500원	
서산시종합사회복지관	1,500원	
부여군노인종합복지관	2,000원	19년 위탁예정
천안시노인종합복지관	2,000원	위탁운영
당진시노인종합복지관	2,000원	
예산군노인종합복지관	2,000원	
태안군노인종합복지관	2,000원	
서천군노인종합복지관	2,000원	
아산시노인종합복지관	1,000원	
홍성군노인종합복지관	1,000원	
계룡시노인종합복지관	1,000원	